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고시 재검토 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본인확인업무)”를 “(본인확인업무 등)”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를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2. 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연계정보처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제16조 중 “2021년 8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17조 중 “2021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별표 6]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종류 등

구 분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이용기관 (고시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유한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따른 고지사항을 전자문서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행정·공공·민간 기관
2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동법 제33조의2에 의한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금융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 이용기관 조건

1.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이용자 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정보처리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12조 (생략)</p> <p>제12조의2(<u>본인확인업무</u>)</p> <p>① (생략)</p> <p>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u>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제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의2(<u>본인확인업무 등</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본인확인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 결과정보를 본인확인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u> 2. <u>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연계정보처리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u>
<p>제13조 ~ 제15조 (생략)</p> <p>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1년 8월 1</u></p>	<p>제13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3년 7월 1</u></p>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종류 등

구분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이용기관 (고시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연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보유한 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따른 고지사항을 전자문서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 고지하고자 하는 행정·공공민간 기관
2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동법 제33조의2에 의한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동법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전송하는 서비스(금융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 이용기관 조건

1.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 법령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목적에
이용자 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정
보처리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521